

第104回(臨時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0年9月7日(木) 11時02分

###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有料廣告에 관한條例(案)
3. 서울特別市鐘路區새마을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產 管理計劃 變更計劃(案)
6. 2000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有料廣告에 관한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새마을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面
4.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產 管理計劃 變更計劃(案)(鐘路區廳長 提出) ..... 1面
5. 2000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鐘路區廳長 提出) ..... 1面

(11時02分 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중로구의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鐘路區有料廣告에 관한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鐘路區새마을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5.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產 管理計劃 變更計劃(案)(鐘路區廳長 提出)

6. 2000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鐘路區廳長 提出)

(11時05分)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有料廣告에 관한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새마을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5항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產 管理計劃 變更計劃(案), 의사일정 제6항 2000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행정위원회 李東奎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李東奎 市民行政委員會 委員

長 李東奎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金以煥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사와 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종로구의회 제3대 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회 李憲九 委員長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도 지난 1년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0년 1월 13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에서 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자치센터의 운영은 동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자치센터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안) 제17조 제1항에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안) 제17조 제4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지역주민 대표인 우리 구의원 모두 뿐만 아니라 전 기초단체의회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므로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난 9월 2일 이 건과 관련하여 의원 간담회를 장시간 개최하여 각자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한 본 건의 심사과정에서 본래 주민자치란 지방행정을 주민 스스로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축소된 동사무소의 기능을 제외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위원의 참여에 지역주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집행부에서 임명한 동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주민의 대표인 지역위원의 참여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어 추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위원회의 구성방법 등 조례 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보다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민선자치시대와 더불어 세계화, 지방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우리 구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책자 등 각종 간행물과 종로사랑지 등에 유료광고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2000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유료광고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경우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 조례(안) 제6조에서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로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등에 광고를 적극 유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2조 제1호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인쇄물 또는 영상의 총체」로 규정하여 「영상」을 「간행물」의 일종으로 하였으나 안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영상과 간행물을 별도로 규정하여 조문간 용어 사용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용어사용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1호의 내용중 간행물이라 함은 「인쇄물 또는 영상의 총체를 말한다」를 「인쇄물의 총체를 말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새마을문고 종로구 지부회장에게도 대상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지급대상자 선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장학생 추천권자에 문고지부회장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서 종로구 새마을장학생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구 지회장이 새마을장학생 선정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운영절차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구 지부장이 새마을장학금 선정시 현행 조례에서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토록 한 것은 추상적인 규정이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 한 것은 보다 공정한 선정을 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4조 장학생 추천권자에 새마을문고 종로구지부회장 뿐만 아니라 같은 새마을 조직인 새마을금고협의회장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 서울特別市鑛路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 (案) 審査報告書
- 서울特別市鑛路區有料廣告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 서울特別市鑛路區새마을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民行政委員會)

(이상 3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李東奎 市民行政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財務建設委員會 金福同 委員長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建設委員長 金福同 財務建設委員會 委員長 金福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

러분! 이렇게 무덤고 지루하기만 하였던 여름도 이제는 절기상으로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고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白露)를 맞이하여 제법 한기까지 느끼게 하는 이때에 우리 의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많은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吳弼根 委員長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1년동안 본 위원회에서 서는 위원회 설치목적적인 능률성과 전문성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보다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세담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신설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에 대한 면허세 확대 감면과 2000년 아셈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그리고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사업소세 50%를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 제2조제2항 국가유공 상이등급 7급에 대한 면허세 감면 규정은 특별소비세법 등에서도 국가유공 상이자에게는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조세를 감면하고 있어 법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 조례(안) 제19조의 4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자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2000년 아셈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시내 중심지인 우리 구에서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었고 조세 감면에 따른 구의 세수 결함도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보전하게 되어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99년 11월 19일 의결한 200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일부를 추가하는 변경(안)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교남동청사가 동 외곽에 위치해 있고 건물이 노후하며 차량 진입이 곤란한 점 등의 사유로 신청사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행정동 180번지 10호 외 5필지의 취득 승인과 명륜3가 경로당이 고지대 외곽에 위치하여 노인들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있는 명륜1가 70번지 1호에 위치한 대상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 삼청테니스장이 점유하고 있는 삼청동 1번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 224평을 무단 이용한다는 사유로 산림청으로부터 1,500여 만원의 변상금과 사전 통지가 있어 이를 차제에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삼청동 테니스장 부지 매입건은 테니스장 설치 이전이나 이후의 행정조직 미흡으로 공원부지인 국유지를 3억 5,000여 만원의 구세를 투입케 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대하여 차후에 행정책임을 규명하는 조건으로 승인 하였습니다. 즉 테니스장 설치 이전에 재산관리청인 산림청과 무상사용 협의의 하지 아니한 점과 사전 협의과정에서 유상사용이 불가하였다면 테니스장 1번 반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구입비 3억 5,000만원, 건설비용 1억 5,000만원과 년 관리비 1,000여 만원이 투입되는 테니스장을 그곳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의 타당성 검토를 결여케 한 점 과 현 국유재산법상 공공시설로서 비영리사업인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한 규정이 있음에도 삼청테니스장이 동호인을 위한 테니스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와 장내 정리비 수준의 허가 사용료를 받고 있어 영리사업이 아니라는 점, 테니스장도 공원시설의 일부이고 공원관리청이 구청이라는 점, 변상금과 사용료를 비교하여 실익이 없을 경우 무상 사용토록 하여 변상금 부과를 피하는 방안 등의 현행 무상사용법 규정을 이용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미흡한 점 등을 들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교남동 청사부지 매입 계획에 있어서도 공시지가가 m<sup>2</sup>당 160만원 임에도 보상예상가를 이보다 100만원 높게 책정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야기시킨 점 이런 지적사항을 최대한 시정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구유재산 취득과정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보편 타당성을 추구하고자 전 위원들이 매우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에 임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産 管理計劃 變更計劃(案) 審査報告書**

(財務建設委員會)

(이상 2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金福同 財務建設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追加更正豫算特別委員會 李炯述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追加更正豫算特別委員長 李炯述 안녕하세요?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李炯述입니다. 존경하는 金以煥 議長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는 최근 경제여건의 호전에 따라 시세인 취득세·등록세의 '99년도 결산잉여금과 향후 세입전망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증액된 금액은 일반회계 65억 3,500만원으로서 세입부

분에 있어서는 추경재원 전액이 서울시에서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이며 세출부분에서는 경상비로 22건에 8억 4,800만원, 투자사업비로 37건에 60억 5,000만원 감액 경정 1건에 3억 6,700만원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경비는 공무원학자금대부 부담금 1억 8,900만원, 소송배상금 부족분 1억 2,300만원 등 총 8억 4,800만원이며 주로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로서는 구청 제2별관 옥상 증축 5억 7,000만원, 교남동청사 부지매입비 13억 3,000만원, 삼정테니스장 토지 매입비 3억 5,400만원 등 총 60억 5,000만원을 배분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편익시설 개선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경정예산 3억 6,300만원은 종로5,6가동 청사 부지 매입비로 당초예산에 18억 1,90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를 14억 5,600원으로 경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최대한 존중하면서 추경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매우 심도 있게 장시간 축조 심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삭감 및 증액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구청 화장실 보수비 1억 5,800만원은 지난 5월 제1차 추경시 편성된 보수비의 부족한 재원을 요구하는 금액이나 심사과정시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중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장시간 매우 심도 있게 다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제2별관 옥상 증축 건에 대하여는 현재 부족한 구청 사무실 및 의회청사공간 확보가 시급한 사안이므로 사무실용으로 건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직원사기 양양 측면에서 제출한 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에 부쳐 공사비중 3,300만원을 삭감하고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청사내 화단정비 및 민원인 편익시설 공사비인 6,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형편상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해화여고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6억원 중 2억 1,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억 2,3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증진과 자체사업 등에 다음과 같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보수공사비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와룡공원의 급수시설 설치비로 3,000만원과 구기동 벚꽃길 조성비로 2,000만원, 명륜4가 206-155번지간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 1,000만원을 증액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부족한 사무실을 확충하고 열악한 의회사무실 공간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제2별관 옥상에 증축한 공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의회요구나 청사 사무실 실정 등을 도외시한 계획으로 이를 강력히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보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2000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追加更正豫算特別委員會)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追加更正豫算特別委員會 李炯述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官理局長 金賢植 行政官理局長 金賢植

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부구청장께서 참석키로 되어 있었으나 부득불 서울시에서 금일 10시에 인사동길 추진사항 보고회에 참석해서 각 기관과 관련 단체와의 협조요청 관계로 부득이 제가 말씀을 올리게 된 데 대하여 이해 있으시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李炯述 追加更正豫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議員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은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여러분야에서 구정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요청하신 예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하여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편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金賢植 行政官理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金賢植 行政官理局長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3대 후반기 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린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짧은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현안 안건 등을 그 어느 회기보다도 안건 하나하나를 매우 신중하게 심사,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특별

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장시간 동안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와 대안 제시 등은 우리 의원들의 책무인 주민의 대변자로서 또는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심사과정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불충분하고 불성실한 답변과 관련 자료 부실 제출 등 의회에 대한 인식이 종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고 특히 열악한 의회청사 문제해결 등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고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종로를 끌어나가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의회 위상정립에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閉會)

○出席議員 19人

金以煥	鄭泰淳	李憲九	吳錦南
千相旭	玄壽漢	安載弘	丁炳煥
劉燦鍾	李炯述	洪承台	金福同
朴鍾植	吳弼根	洪起瑞	崔康洵
李東奎	金正大	宣相善	

○出席關係公務員

行政官理局長 金賢植  
 財務局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保健所長 李星世

